

식품용 수입약재 한약재로 변칙유통 성행 관세율 차등적용등 근본대책안 마련 시급 생약협회, 식품용 원형 그대로 반입규제 건의

최근 식품원료로 반입된 수입약재가 시중에서 한약재로 변칙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생약농업에 대한 우려의 소리와 함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약재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수급조절품목 중 식품으로 반입된 물량은 8월3일 현재 958,882kg으로 약 1천여톤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식품으로 반입되는 절차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식약청 집계자료는 실제 유통량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설명. 식품원료용의 한약재로 변칙유통 비율은 전체 한약재 시장의 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황기, 천궁, 구기자, 오미자 등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국산시세 폭등현상을 보인 일부품목의 경우는 유통비율이 훨씬 많고 오미자는 80% 이상을 이들 식품용 반입 물량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 분석이다. 식품원료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이들 수입약재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 국산보다 상대적으로 헐값에 유통되거나 국산과 혼용돼 산지시세 폭락을 부추김으로서 생약농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수입·국산 시세비교
(600g기준 8월현재도매시세)

품 목	국 산	수입산
구기자	12,000	2,200
당 귀	6,500	5,000
백 출	9,000	2,800
오미자	18,000	2,600
작 약	4,500	3,000
창 출	6,000	2,200
천 궁	8,000	3,800
황 기	7,500	2,800

‘수입식품판매허가증’만 있으면 마음대로 수입해와서 식품제조업소나 재래시장등에 판매할 수 있는데다 사후관리를 관할 시·군·구청이 맡게 돼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이들 기관에서의 효과적인 단속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

또 적발해 낸다 하더라도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어 식품원료용 수입산의 한약재 변칙유통문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얼마전 식품용 수입약재가 한약재로 불법유통되는 것을 적발해내 식약청에 알렸지만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는 관계로 품질관리원 차원에서 얼마간의 관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고

99년도 식품으로 수입된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현황 (1999. 1. 1 ~ 8. 5현재)
(단위: kg)

품 목	수 량
오미자	117,352
구기자	143,841
백 출	93,136
천 궁	194,130
황 기	269,168
창 출	120,405
백작약	1,500
지 황	1,000
당 귀	18,350
계	958,882

떨어졌다. 식약청 식품유통과 식품관리과에서는 관련단체등에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 물량 수입업자를 통고하는 것이 고작이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업계 일각에서는, 식품으로는 무한정 들여올수 있는 상황에서 수급조절제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제도 폐지론까지 강하게 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산약재에 대한 수매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완전개방은 국내 생약 생산기반의 붕괴를 자초하리란 우려속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생약협회는 최근 ‘수입 식품원료의 한약재 변칙유통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이란 내용의 건의문을 통해 “한약재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수급조절품목에 한해서는 식품으로의 반입도 제한함으로써 일관된 정책관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동일품목의 약재라 하더라도 식품으로 반입되는 경우 농림부 관할 하에 추천할수 있도록 하고, 한약재로 반입때 보다 관세율을 차등 적용한다면 간접적인 반입 제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은 한약재나 식품으로 반입시 동일한 8%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한약재의 식품으로 무분별한 반입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 마늘,고추, 감자 등 다른 농작물의 경우 식품원료나 농산물(식용)으로 반입시 200~300%, 높게는 600% 까지 고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8% 관세율은 사실 턱없이 낮은 편.

생약협회는 또 “식품원료로 반입되는 품목은 원형 그대로의 반입을 규제하고 식품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분말이나 농축엑스제)로만 반입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식품용 수입약재의 불법유통 문제는 자칫, 생산자보호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는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폐지론으로 까지 발전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신중한 대책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문정희〉

한약재는 대부분 고온에서 3~4시간 가열하여 복용함으로 복용시의 표백제 함유수치는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생약협회 등 5개 한약관련단체는 최근 한약재에 대한 표백제 함유기준치(10ppm)의 적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표백제 검출이 예상되는 원료한약재를 시험 의뢰한 결과 “탕제하였을 경우 표백제 전량이 증발,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분의 한약재는 한약 전문가의 지시에 의하여 중탕을 거친 후 복용하게 되므로 현행 10ppm 기준은 무의미 하다”고 지적하고 “식품보다 섭취량 및 빈도가 적은 한약재에 대하여는 표백제 기준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약재 검사항목중 표백제란 아황산염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식품을 저장 또는 유통시킬때 부패 및 변색방지를 위해 사용하거나 인위적인 첨가 없이도 소수의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현행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상 한약재의 경우 1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불검출 원칙에 의

중탕 한약 표백제 불검출 한약관련단체, 기준 재설정 건의

한 것이다.

그러나 문헌에 의하면 대한약전 통칙에서 훈증제 사용을 명문화한 바 있으며 중국 심양약학원에서 발간한 약재상품학에서는 백작약 등의 약재에 있어 유향훈증이 명기되어 있다. 일본 및 중국에서는 일부 약재에 대해 유향훈증 및 표백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것.



또 식품첨가물공전(1996)에 따르면 국내 건조과일류에 대한 아황산함량 기준치는 2000ppm이며 박고지는 5000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건조과일의 아황산함량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등은 규제가 없으며 캐나다 2500ppm, 영국, 스위스, 프랑스등도 2000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섭취량 및 빈도가 잦은 식품류도 최고 5000ppm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의약품에서 10ppm이란 기준은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관련단체들의 집약된 의견이다.

이에 한약관련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오염의 원인을 생산과정, 건조과정, 유통과정으로 분류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태파악 및 각종실험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적어도 1년)동안은 별도의 단속을 유보하고 결과가 나온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약재 표백제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파우치(탕제)종류에 따른 표백제 시험결과

구 분	검체 (ml)	결과 (ppm)	비 고
쌍화탕	①113	4	백작약, 황기, 당귀, 천궁 등
	②115	5	
	③125	5	
	④121	1	
보 약	①107	1	갈근, 황기, 인삼, 백작약, 맥문동, 석창포 등
	②116	1	백작약, 황기, 맥문동, 당귀, 천궁, 반하, 인삼, 행인 등
	③105	3	인삼, 당귀, 천궁, 백작약, 황기, 맥문동, 패모, 반하 등
	④ 99	1	당귀, 황기, 맥문동, 길경, 택사, 산약 등
	⑤116	4	맥문동, 택사, 산약, 백작약, 당귀, 황기 등
	⑥122	1	
	⑦126	1	
	⑧120	1	
	⑨116	2	

(자료제공: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